

1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

제정 2013. 06. 26.(규정 제12호)

개정 2020. 08. 27.(규정 제11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하는 진흥원 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진흥원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사업·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0. 8. 27.)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진흥원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이나 규정에 있는 경우
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
3. 국가나 경상남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진흥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지원사업 기간

6. 기타 진흥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원사업의 효과
8.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진흥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자 선정) ① 진흥원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진흥원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성 여부

제7조(지원금의 교부조건) ① 진흥원 원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자체 부담과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지원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원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통지) ① 진흥원 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자로 선정하

고,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과 조건을 기재한 교부통지서를 지원사업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진흥원 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하며, 지원시기 및 지원금의 규모는 진흥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진흥원 원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진흥원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7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원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법령 및 규정,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진흥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한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실적보고) 지원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진흥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검사 및 평가) ① 진흥원 원장은 제13조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원사

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② 진흥원 원장은 지원사업 기간 중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진흥원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지원사업의 신고) 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내에 진흥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16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진흥원 원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
5.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산, 평가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6. 제10조의 각항에 해당된 때

제1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8.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